##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88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한병도・황운하・진선미

양부남 · 김영배 · 이춘석

이해식 • 박용갑 • 이워택

정태호 · 위성곤 · 신정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 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 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 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

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 확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5조제7항 후단에 따른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등록정보의 진위 • 변경 여부 확인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	⑦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	
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	
<u>신설&gt;</u>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u>장의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u>
	부 확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② (생 략)	제5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제45조제7항 후단에 따른 관
	할경찰관서의 장의 등록정보

	의 진위·변경 여부 확인 조
	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
	지 아니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